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 추가〉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01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한지아의원 등 14인
2. 제 출 일: 2025. 5. 13.
3. 회 부 일: 2025.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국 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출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제4조(출국의 금지) ① ----- -----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6호까지</u> 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략)	7.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요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8. -----제7호까지의-----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헌행법 제4조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²⁾은 납부기한이 1년이상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2210502호)]

제83조의2(출국금지 요청)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공단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의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보험급여 제한이나 연체금 징수·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특히 1년 이상 총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의안번호 제2210502호, 발의일: 2025. 5. 13.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총 체납자는 92만 8,378명이고, 체납액은 2조 8,971억원이며, 이 중 3천만원 미만 체납자 수는 전체 체납자의 98.9%인 91만 7,979명, 체납액은 체납총액의 77.9%인 2조 2,564억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전체 체납자의 0.4%인 4,156명인 반면, 체납액은 체납총액의 13.9%인 4,031억원으로 나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나 적은 인원수에 비해 체납액은 높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1년 경과 장기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체납자수	체납액	체납자수	체납액	체납자수	체납액	체납자수	체납액
지역가입자		866,632	17,638	2,073	784	862	555	74	89
직장 가입 자	개인	13,896	1425	1,183	457	725	491	234	459
	법인	37,451	3501	2,987	1,134	1,629	1,102	632	1,335
	계	51,347	4,926	4,170	1,592	2,354	1,593	866	1,794
합계 (비율, %)		917,979 (98.9)	22,564 (77.9)	6,243 (0.7)	2,376 (8.2)	3,216 (0.3)	2,148 (7.4)	940 (0.1)	1,883 (6.5)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2026.1월말 기준)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보험료 체납자 중 공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추가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인정됨.

4)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수, 직장가입자 중 법인의 경우 개소수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전반적인 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2210502호) 검토보고서 및 국민건강보험 제공 자료를 인용함.

다만,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고 있는데,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 자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출국의 금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요청하게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바,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연관성 및 비례원칙 준수가 필요할 것임.

【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취소 관련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요지 일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

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는 해당 법률에서 가능한 제재적 조치를 취한 후 최후 수단적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다른 출국금지 조치와의 균형성 차원⁵⁾에서 요청되는 것인바,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이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처분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⁶⁾.

참고로 출국금지 대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중 직장가입자가 법인인 경우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등 체납 책임을 지는 유형이 다양함을 감안할 때⁷⁾, 출국금지요청 대상 규정의 명확성

5) 예를 들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출국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결정 등이 있는 후에, 체불 임금 사업주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법원의 결정이나 다양한 불이익 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최후의 수단적 방안으로 출국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관련 규정은 각주 3)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와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참조

7)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각주 3) 밑줄 참조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

및 체납 행위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거주·이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⁸⁾.

문 의 처
02)6788-5057

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각주 3) 밑줄 참조

8) 개정안은 2025. 05. 14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임.